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. 6. 9 선고 2020가단4018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청구의
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진대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1. 5. 12.

판 결 선 고 2021. 6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대 1,015㎡에 관하여,
가.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73. 10. 13. 접수 제19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,
나. 같은 등기소 1973. 10. 13. 접수 제197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
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가. 원고는 1973. 10. 4. 피고(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)와 경남 남해군 C 대 1,015㎡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, 채권최고액 950,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, 지상권자를 피고, 존속기간을 1973. 10. 4.부터 만 15년으로 정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.

나.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73. 10. 13. 접수 제197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 한다) 및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972호로 지상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’라 한다)를 각 마쳐주었다.

다.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이미 변제하였거나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,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.

라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이아영